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637

발의연월일: 2020. 8. 3.

발 의 자:신현영·안민석·김정호

김성주・이탄희・김병욱

임호선 · 홍정민 · 고영인

박 정 의원 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 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나 질문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현행법이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고된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아동학대범죄가 있었을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적발이 어려워 신고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를 지속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된 현장 뿐 아니라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이를 방 해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,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11조제2항 및 제6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현장"을 "현장 또는 사건 조사 를 위한 관련 장소"로 한다.

제61조제1항 중 "1천500만원"을 "5천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현장출동) ① (생 략)	제11조(현장출동) ① (현행과 같
	승)
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	2
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	
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	
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	
<u>현장</u> 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	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
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	<u>런 장소</u>
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	
수 있다. 다만, 아동학대전담공	
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	
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	
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	
문을 할 수 있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61조(업무수행 등의 방해죄) ①	제61조(업무수행 등의 방해죄) ①
제11조제2항·제3항, 제12조제1	
항, 제19조제1항 각 호, 제36조	
제1항 각 호 또는 제47조제1항	
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	
인 사법경찰관리, 아동학대전담	

공무원이나	아동보	호전된	기관
의 직원에	대하여	폭행	또는
협박하거나	위계 또	드는 우]력으
로써 그 업	무수행을	방해	한 사
람은 5년 여	이하의 정]역 또	는 <u>1</u>
천500만원	이하의 별	벌금에	처한
다.			

2.	3	(생	략)

<u>5</u>
<u>천만원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